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2.

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 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,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점유부지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가. 계획의 총괄

○ 취득대상 재산

- 토 지 : 2필지 2,544.6㎡ 3,099,177천원

나. 취득대상 재산현황

○ 토 지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공시지가 (천원)	추정금액 (천원)	소유자	취득사유
	소재지	지목	지 적 (m ²)	편입면적 (m ²)				
계	2필지		2,544.6	2,544.6	1,919,720	3,099,177		
1	반구동 785-1	대	1,312.3	1,312.3	724,389	1,299,177	기획재정부	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
2	학성동 153-1	대	1,232.3	1,232.3	1,195,331	1,800,000	기획재정부	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

다. 사업계획 (관리계획 사업별 내역)

①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

-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85-1번지
- 소 유 자 : 기획재정부
- 부지면적 : 1필지, 1,312.3m²
- 추정가액 : 1,299,177천원

[건 물 개 요]

- 규 모 : 지상3층
- 연 면 적 : 617.13 m²
- 건축년도 : 1989. 9. 1

②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

-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53-1번지
- 소 유 자 : 기획재정부

- 부지면적 : 1필지, 1,232.3m²
- 추정가액 : 1,800,000천원

【건물개요】

- 규 모 : 지상2층
- 연 면 적 : 1,014 m²
- 건축년도 : 1985. 9. 1

3. 취득 사유

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관련법 위배 및 부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인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 부지취득을 통한 소유권 확보로 재산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.

4. 근거 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
-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

5. 참고 사항

- 2009년도 관리계획변경총괄표 1부
-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
- 위치도 및 현장사진 2부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673)

1. 의안명 :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2. 3(수)

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2. 6(금)

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2. 13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,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점유부지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

○ 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85-1번지

○ 부지면적 : 1,312.3㎡

○ 추정가액 : 1,299,177천원

※ 건물면적 : 지상 3층 617.13㎡, 건축년도 : 1989년

○ 취득사유 : 노인여가 공간활용

나.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

○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53-1번지

○ 부지면적 : 1,232.3㎡

○ 추정가액 : 1,800,000천원

※ 건물면적 : 지상 2층 1,014㎡, 건축년도 : 1985년

○ 취득사유 : 국유지 무단점유로 법적인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 부지취득을 통한 소유권 확보로 재산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함.

5. 관련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

다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

라.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

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
○ 본 의결의 건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
-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건과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점유 부지

공유재산은 노인의 여가 공간 활용 등 노인복지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 (적절)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특히, 위 두건은

- 국유지상 청사부지의 매입, 건물이전,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 위배로 부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등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 있음.
- 만약, 이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지취득을 통한 소유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.

7. 심사결과

-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 : 원안가결
-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 : 원안가결